

김해시복지재단 직인 폐기 공고

(재)김해시복지재단 예산회계규정 제6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5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인폐기를 공고합니다.

2019. 09. 27.

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이사장

1. 폐기사유 : 예산회계규정 회계 관직 규정
2. 폐기일자 : 2019.09.27
3. 폐기 직인 인영

직인명	인영	형체 및 규격
김해시복지재단 수입원인		정방사각형 18mm×18mm